



군산대학교와 군산시 간 플로팅건축 연구개발 사업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



국립 군산대학교(이하 “군산대”)와 군산시는 “수해양 문화공간을 위한 정주형 플로팅건축 설계기술 개발”(이하 “플로팅건축 연구개발”)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 적)

본 양해각서는 군산시와 군산대(이하 “양기관”)가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지역기술혁신과제 플로팅건축 연구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관계를 수립 및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대 상)

양기관은 플로팅건축 연구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대상으로 상호협력하며, 구체적 이행을 위한 각 항목별 세부 사항과 조건 등은 필요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.

제 3 조 (주요 협력 내용)

양기관은 다음 항목에 대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며, 구체적 이행을 위한 각 항목별 세부 사항과 조건 등은 필요시 별도로 협의한다.

- ① 관련 연구개발 자료 및 정보의 교환
- ②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상호지원 및 공동참여
- ③ 기타 양 기관의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

제 4 조 (사무처리)

본 양해각서와 관련된 제반실무사항은 군산시 건설교통국 건축과와 군산대 플로팅건축 연구센터에서 처리한다.

제 5 조 (비밀유지)

양 기관은 상호 서면동의 없이는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기술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6 조 (시행약정)

양 기관은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이 합의한 업무협조내용의 상세한 범위, 방법, 절차 및 권리의무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 7 조 (발효일 및 유효기간 등)

- ① 본 양해각서는 양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발효되고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.
-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의 변경 또는 폐기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- ③ 본 협약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를 2부 작성,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1년 5월 12일

군산대학교
총장 채정룡

채정룡

군산시
시장 문동신

문동신